



제 300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24. 08. 27.(화) 10:00 제1차 본회의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 안 설 명

(성낙철 의원 대표발의)



고령군의회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성 낙 철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장단을 선출 시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정견 발표 없이 바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의장단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이 의회사무과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등록된 의원 중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후보자등록방식으로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는 결선 투표 시 득표수가 같을 때 당선자 선정 방식을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단일 후보 등록 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선거를 실시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의장·부의장 후보자는 중복하여 입후보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 당일 입후보를 등록하여 의장단을 선출하며

안 제8조의3에서는 후보자 게재순위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합니다.

또한 의장단은 의회의 다른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한 안 제11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규칙안은 “붙임내역” 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성낙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8. .

발 의 자 : 성낙철 · 이철호 · 유희순 ·
김명국 · 성원환 · 김기창

1. 제안이유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정견 발표 없이 바로 무기명투표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기존의 교황식 선출 방식에서 의회사무과에 의장단 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된 의원 중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후보자 등록제 방식으로 의장단 선출방식을 변경함.

2. 주요내용

- 가. 결선투표 시 득표수가 같을 때 당선자 선정방식을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 (안 제8조3항)
- 나. 단일후보자 등록 시에도 과반수 득표를 하여야 함. (안 제8조4항)
- 다. 의장단 선거 방식을 기존 교황 선출식에서 후보자 등록방식으로 변경.
(안 제8조의2)
- 라. 후보자 게재 순서는 후보자 등록순. (안제8조의3)
- 마. 의장단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 삭제 (안 제 11조의 2)

3.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연장자”를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후보자 등록) ① 의장·부의장 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5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만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④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정견발표에 대해 다른 의원의 질의·토론 등 일체의 발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후보자인 발표자는 본인의 정견 외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 절 회의의 개폐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